

을종 보호대상(제5조제3항 관련)

1. 제5조 제3항에 따른 을종 보호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		보호대상의 종류
건축물	주택·업무시설	단독주택, 공동주택(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.) 공공업무시설, 일반업무시설, 교정시설, 갯생보호시설
	근린생활시설	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
	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	주유소 및 석유판매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고압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
	기타	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
생태·경관 보호지역		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·경관보호지 역